

1. 개정이유

청년 생애 최초 연금보험료 지원을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27.1.1. 시행)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위임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년 생애 최초 연금보험료 지원 및 가입기간 추가 산입의 절차·방법
신설 (안 제44조의4)

1) 신청 서식 및 신청 결과 통지의무 규정

2) 연금보험료의 지원을 갈음하여 1개월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는 경우 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4를 제44조의5로 하고, 제4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4(청년에 대한 생애 최초 연금보험료의 지원 신청 등) ① 법 제100조의5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의 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29호의5 서식의 청년 생애 최초 연금보험료 지원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공단은 신청인이 법 제100조의5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인지 여부 및 가입기간 추가 산입 여부 등을 결정하여 그 결과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법 제100조의5제1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날(이하 “지원 신청일”이라 한다)에 가입자 자격이 있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법 제100조의5제2항에 따라 임의가입자로 간주되는 경우

나.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달에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신청인이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였으나 지원 신청일 이전에 그 자격

을 상실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지원 신청일 이전에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경우

나. 지원 신청일 이전에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지원 신청일이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에
해당하는 경우

④ 법 제100조의5제1항에 따른 연금보험료 지원 시점은 해당 지원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한다.

⑤ 공단은 지원 신청일 이후에 신청인의 가입자 자격 취득·상실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결정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변경 결정의 내용 및 그 이유를 지체 없이 해당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2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9호의5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 전 청년에 대한 생애 최초 연금보험료 지원의 신청에 관한 준비행위 및 특례) ① 청년에 대한 생애 최초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이 규칙 시행 전에 공단에게 제44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원 신청을 미리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류는 해당 신청을 한 사람이 18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초일에 받은 것으로 본다.

[]임의 []가입
[]임의계속 가입자 []탈퇴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전화번호(주택) (회사) (휴대전화)	
	주소 우편번호()	
※ 가입 신청 시 기재사항	직업 부호 소득월액 원 증서유무 []유 []무	
	※ 아래의 사항은 해당하는 경우에만 기재하십시오.	
	사업장 종사여부 []종사 []비종사	
	사업장 관리번호	사업장 명칭
	현재까지 가입기간 개월	탈퇴예정일 년 월 일
	취득월 납부여부(임의가입자에 한정함) []납부 희망 []납부 미희망	[] 청년 생애 최초 연금보험료 지원 신청 (「국민연금법」 제100조의5)
보험료 자동이체 신청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성명	예금주 주민등록번호 가입자와의 관계
	이체희망일 []납기일 []납기전월 말일	

「국민연금법」 제10조 및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및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임의(임의계속)가입자의 가입(탈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	----	--------

가입 시 확인사항

국민연금수급권자에게 둘 이상의 급여의 수급권이 생기면 본인의 선택에 따라 하나의 급여만 지급되고, 다른 급여는 지급이 정지되거나 일부만 지급된다는 「국민연금법」 제56조의 내용에 대하여 안내를 받았으며, 본인의 의사에 따라 국민연금에 (계속)가입하고자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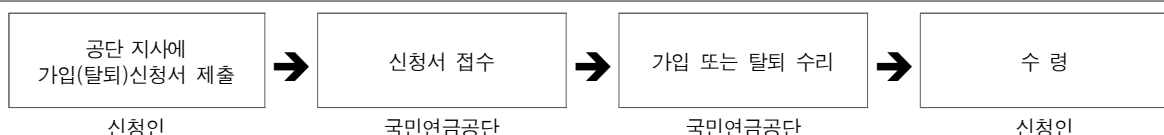
유의사항

1.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 및 별정우체국 직원으로 다른 공적연금에 가입 중인 사람은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다른 공적연금의 수급권자는 임의가입이 가능합니다.
2. 착오 등으로 잘못 신고한 경우에는 즉시 정정신고하거나 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국민연금법」 제100조의5에 따른 청년 생애 최초 연금보험료 지원 신청은 2027년 1월 1일자로 18세가 되는 자부터 신청 가능하며, 신청 후 지원 여부를 확인하여 개별 통지해드립니다.

작성방법

1. 색상이 어두운 란과 “*”표시란은 적지 마십시오.
2. 이 신청서는 공단 지사에 제출하십시오.
3. 신청서 상단의 해당 “[]”란에 “√”표를 하십시오.
예) 임의가입자 탈퇴를 원하는 경우에는 “[] 임의가입자” 및 “[] 탈퇴신청서”란에 “√”표를 함
4. “신청인”란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는 주민등록표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으십시오.
5. 가입자증서를 교부받으려면 “증서유무”란의 “[]무”에 “√”표를 하십시오.
6. “사업장 종사여부”란에는 해당 “[]”란에 “√”표 하십시오, 사업장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사업장관리번호 및 명칭”도 적으십시오.
7. 취득월의 납부 희망여부는 임의가입자의 경우에만 적으십시오.
8. “자동이체신청서”란에는 가입자 본인이 거래하는 은행, 우체국, 농협, 수협 등의 금융기관명과 계좌번호를 적되, 대신 납부할 경우에는 예금주 성명·주민등록번호·가입자와의 관계를 적으십시오.
9. 「청년 생애 최초 연금보험료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란 “√”표를 하십시오.

처리절차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변동신고서

[] 기존에 지역가입자가 없을 때, [] 기존에 지역가입자가 있을 때 (증번호:)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	-----	------	----

국민연금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주택)		(회사)	(휴대전화)
	주소 우편번호()			
	고지서 수령장소 우편번호()			
	자격취득 연월일		월 소득액	전자우편주소
	특수직종 근로자 []광원 []부원		종사업종 및 직업명	업종코드
	취득월 납부여부 []납부희망 []납부 미희망			
	[]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신청(「국민연금법」 제100조의4) [] 청년 생애 최초 연금보험료 지원 신청(「국민연금법」 제100조의5)			
해당자의 경우	납부예외	사유부호 기간		
	적용제외	사유부호		

보험료 자동이체신청 [] 자동이체 계좌 [] 환급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성명	예금주 주민등록번호	가입자와의 관계
	이체희망일	[]납기일	[]납기전월 말일

전자고지 신청	고지방법 []전자우편 []인터넷홈페이지(사회보험통합정보포털)	수신처
	수신자 성명	수신자 주민등록번호

건강보험	세대주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주소지(외국인등록지·국내거소신고지)		우편번호()								
		고지서 수령장소 우편번호()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주택) (회사)		(휴대전화)								
		보험료 감면부호		지역가입자 자격여부 []예 []아니오								
	가입자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 신고번호)	취득 (변동) 일자	추 득 (변 동) 일 월	장애인/국가유공자	외국인			추가 발급 코드	
							부호 /등급	등록일	국적	체류 자격		체류 기간

위와 같이 자격 취득(변동)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신고인(세대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뒤쪽)

첨부서류	국민 연금	1. 임금대장 사본 또는 선원수첩 사본 등 특수직종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자격취득신고시에 특수직종근로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자격취득신고서 납부 예외 신청자의 경우에는 진단서 또는 휴직발령서 사본 등 납부 예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병역의무의 수행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수수료 없음
	건강 보험	1. 보험료 감면 증명자료: 재학증명서, 재소확인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보험료 감면 신청자만 제출합니다) 2.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외국인인 경우 가. 외국인등록증 사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증 사본(「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만 해당합니다)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만 제출합니다) 1부 나. 체류자격별 구비서류: 재직 또는 재학증명서(D-1, D-2, D-4, D-5, D-7, D-8, E-4), 고용계약서 등(E-1부터 E-3까지, E-5부터 E-7까지, E-10), 소득명세서(D-3, D-5부터 D-9까지), 임금명세서(E-1부터 E-10까지, H-1, H-2), 구직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D-10) 3.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재외국민인 경우 가.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본 1부 나. 소득명세서 등 보험료 부과에 필요한 서류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1부	

유의사항

건강 보험	1. 외국인은 해당 체류자격이 있어야 지역가입자의 자격 취득이 가능합니다. 2. 건강보험료 감면신청은 첨부서류 및 해당사실 확인 관계로 주주식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로 직접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민 연금	1. 같은 세대에 가입대상(아래의 적용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개인별로 각각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국민연금법」 제100조의4에 따른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신청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가능하며, 신청 후 지원요건을 별도로 확인하여 개별 통지해드립니다.

작성방법

공통 사항	1. “고지서 수령 장소”란에는 주소와 고지서 수령 장소가 다른 경우만 적되, 고지서를 받으려는 장소를 적습니다. 2. “부호”란에는 각 사유에 해당하는 취득·납부예외·감면부호를 적습니다. 3. “보험료 자동이체신청”란에는 “자동이체계좌”인지를 표시하고, 가입자 본인이 거래하는 은행, 우체국, 농협·수협 등의 은행명과 계좌번호를 적되, 대신 납부하거나 환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예금주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가입자와의 관계를 적습니다. 4. 전자고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전자고지 신청”란에서 원하는 고지방법에 “[√]”표시를 하고, 전자우편이나 휴대전화를 선택한 경우, 수신처에 전자고지를 받으려는 전자우편(E-mail)주소 또는 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 휴대전화로 신청할 경우 본인명의 확인을 위해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본인확인절차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민 연금	1. “월 소득액”란에는 자격취득 당시 종사하는 업종에서 얻는 각종 실세소득(농업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을 합산한 평균 월 소득액을 적습니다. 2. “업종코드”는 국제청 업종코드를 적습니다(부여합니다). 3. 취득월의 보험료 납부회향여부는 취득일이 1일인 경우를 제외하고 적습니다.4. 「국민연금법」 제100조의4에 따른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신청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취득 신고하는 경우부터 가능하며, 신청 후 지원요건을 별도로 확인하여 개별 통지해드립니다. 5. 「국민연금법」 제100조의5에 따른 청년 생애 최초 연금보험료 지원 신청은 2027년 1월 1일자로 18세가 되는 자부터 신청 가능하며, 신청 후 지원 여부를 확인하여 개별 통지해드립니다.
건강 보험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 체류자격(외국인등록증 기재내용), 체류기간(외국인등록증 발급일부터 출국 예정일까지)을 적습니다.

자격취득부호 등

	[적용제외사유 부호]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사유 부호]
국민 연금	1. 18세 미만, 60세 이상인 사람 2.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사람 3. 27세 미만으로서 학생, 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사람(연금보험료 납부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외) 4.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및 그 무소득 배우자 5. 타 공적연금 가입자 및 그 무소득배우자 6. 국민연금노령연금수급권자, 퇴직연금(타공적연금)등 수급권자 및 그 무소득 배우자 7.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8. 특수직종으로 인한 노령연금수급권자 및 그 무소득배우자 9.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하고 지급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및 그 무소득배우자 10. 기타 11. 협정국 연금 가입 12. 1년 이상 행방불명	1. 실직 2. 병역의무수행 3. 재학 4. 교정시설 수용 5. 보호(치료)감호시설 수용 6. 1년 미만 행방불명 7. 3월 이상 입원 8. 자연재해 등으로 보조(지원)대상 9. 사업 중단 10. 휴직(기타사유) 11. 재해·사고 등으로 기초생활 곤란 12. 휴직(산전후휴가·육아휴직) 13. 휴직(산재요양) 14. 기타

건강 보험	[취득부호]: 최초취득 <00>, 출생 <03>, 의료급여수급권자등에서 제외 <04>, 직장 피부양자 상실 <06>, 유공자 등 건강보험적용신청 <10>, 거주불명 등록 후 재등록<14>, 국적취득 <17>, 기타 <13> [변동부호]: 직장에서 퇴직 <05>, 특수시설(교도소등)수용해제 <11>, 입국 <12>, 군 제대 <15>, 특수시설(교도소등) 수용 <20>, 출국 <21>, 군 입대 <22> [감면부호]: 11. 섬 거주, 12. 벽지 거주, 21.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31. 등록장애인, 32. 국가유공자 등, 41. 소년소녀가장세대, 51. 모자가정세대, 52. 부자가정세대, 53. 조손가정세대, 54. 55세 이상 여성단독세대, 61. 사업장화재, 62. 사업장부도, 63. 재산경매, 64. 재산압류, 71. 장기수용자, 72. 행방불명, 73. 만성질환자, {재해: 81.(인적 물적 피해), 82.(인적피해), 83.(물적피해)}{농어촌경감: 91.(농업) 92.(어업) 93.(임업) 94.(광업) 95.(기타)} [장애종류 및 국가유공자 등 부호]: 1. 지체장애인, 2. 뇌병변장애인 3. 시각장애인, 4. 청각장애인, 5. 언어장애인, 6. 지적장애인, 7. 자폐성장애인, 8. 정신장애인, 9. 신장장애인, 10. 심장장애인, 11. 호흡기장애인, 12. 간 장애인, 13. 안면장애인, 14. 장루·요루장애인, 15. 뇌전증장애인, 19. 국가유공자 등 [체류자격]: 문화예술(D-1), 유학(D-2), 산업연수(D-3), 일반연수(D-4),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구직(D-10),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행행(E-6), 특정활동(E-7),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동거(F-1), 거주(F-2), 동반(F-3),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관광취업(H-1), 방문취업(H-2)
----------	--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및 확인	➔	신고서 처리	➔	자격취득(변동) 확인 통지	➔	수령
신고인		국민연금공단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 국민건강보험공단		신고인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 신청서 []납부 재개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일
------	------	------	----

[] 지역가입자가 신청(신고) 하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전화번호(자택)		(회사)		휴대전화		
	전자우편주소(e-mail)						
	*납부 예외 신청 시 작성			*납부 재개 신고 시 작성			
	예외사유 부호	납부 예외일	납부 재개 예정일	납부 재개일	소득월액	재개월 납부희망여부	특수직종 부호
						[]희망 []미희망	
[]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신청(「국민연금법」 제100조의4)			[] 청년 생애 최초 연금보험료 지원 신청 (「국민연금법」 제100조의5)				

보험료 자동이체 신청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성명		예금주 주민등록번호		가입자와의 관계
	이체희망일		[] 납기일	[] 납기전월 말일	

[]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신청(신고) 하는 경우	사업장 관리번호		사업장 명칭			전화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납부 예외 신청시 작성			*납부 재개 신고시 작성			특수직종부호
			예외사유 부호	납부 예외일	납부 재개 예정일	납부 재개일	소득월액	재개월 납부 희망여부	
							[]희망 []미희망		
							[]희망 []미희망		
							[]희망 []미희망		
							[]희망 []미희망		
							[]희망 []미희망		
							[]희망 []미희망		

「국민연금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연금보험료의 납부 예외(납부 재개)를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귀하

지역가입자 예외사유 부호

1. 실직 2. 병역의무수행 3. 재학 4. 교정시설 수용 5. 보호(치료)감호시설 수용 6. 1년 미만 행방불명
7. 3개월 이상 입원 8. 자연재해 등으로 보조(지원)대상 9. 사업중단 10. 휴직(기타사유)
11. 재해·사고 등으로 기초생활곤란 12. 기타

사업장가입자 예외사유 부호

1. 산전후휴가·육아휴직 2. 병역의무수행 3. 재학 7. 3개월 이상 입원 11. 휴직(기타사유) 12. 무보수 대표이사
13. 무급 근로자 21. 산재요양 22.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지 않는 자

첨부서류	진단서나 휴직발령서 사본 등 납부 예외 신청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병역의무의 수행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1.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 신청의 경우에는 “[]납부 예외신청서”란에, 납부 재개신고의 경우에는 “[]납부 재개신고서”란에 “√”표시를 하십시오.
2. “납부 재개 예정일”란에는 지역가입자는 납부 예외기간이 종료되는 일자를, 사업장가입자의 경우에는 복직발령(예정)일자를 납부 예외 신청 시 적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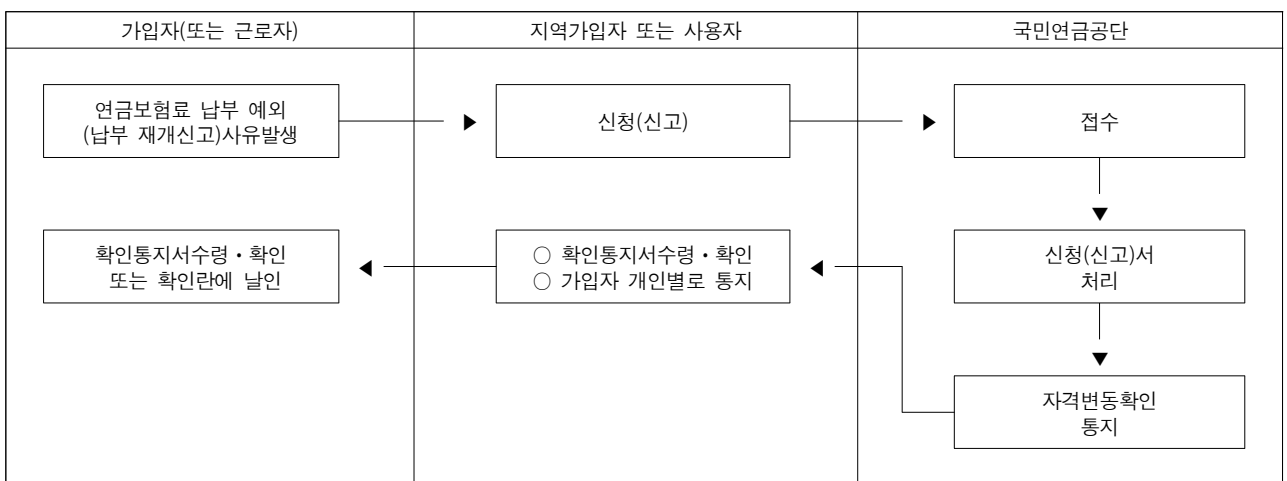
<납부 예외 신청시>

3. “지역가입자 예외사유부호”란 또는 “사업장가입자 예외사유부호”란에는 각각 그 납부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번호를 적으십시오.
4. “납부 예외일”란에는 납부예외사유의 발생으로 연금보험료 납부가 곤란하게 된 날을 적으십시오.
5. 사업장가입자 예외사유 부호 중 “12. 무보수 대표이사”는 2011년 6월 6일까지 신청 가능하고, 2011년 6월 7일부터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상실사유에 해당합니다.

<납부 재개 신고시>

6. “소득월액”란에는 납부 예외 신청사유가 소멸할 당시 종사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월액을 적으십시오.
7. 재개월의 납부회망여부는 재개일이 1일인 경우를 제외하고 적습니다.
8. “특수직종부호”란에는 해당 근로자가 「광업법」 제3조에 따른 광업 종사자 중 갱내근로자인 광원인 경우에는 “1”을, 「선원법」 제2조에 따른 선박 중 어선에서 직접 어로작업에 종사하는 “부원”인 경우에는 “2”를 적으십시오.
9. “보험료자동이체신청”란은 지역가입자가 납부 재개 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작성하여 주시고, 가입자 본인이 거래하는 은행, 우체국, 농협·수협 등의 금융기관명과 계좌번호를 적되, 대신 납부할 경우에는 예금주 성명, 주민등록번호, 가입자와의 관계를 적으십시오.
10. 「국민연금법」 제100조의4에 따른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신청은 2026년 1월 1일 이후 납부 재개를 신고하는 경우부터 가능하며, 신청 후 지원요건을 별도로 확인하여 개별 통지해드립니다.
11. 「국민연금법」 제100조의5에 따른 청년 생애 최초 연금보험료 지원 신청은 2027년 1월 1일자로 18세가 되는 자부터 신청 가능하며, 신청 후 지원 여부를 확인하여 개별 통지해드립니다.
12. 착오 등으로 잘못 신고한 경우에는 즉시 정정신고 하거나 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5일		
지원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e-mail)				
	주소			우편번호()				
	통지방법	전자문서(모바일)						
법정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번호		지원대상자와의 관계			
	주소							

신청인 (법정대리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신청인 제출서류	법정대리인(후견인)이 신청할 경우 법정 대리(후견인)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등)	수수료
담당 직원 확인 사항	1. 지원대상자의 연령 및 자격 2.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법정대리인과 지원 대상자와의 관계	없음

1. 신청 시 법 제100조의5에서 정한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에 해당하는 1개월의 연금보험료가 지원됩니다.
2. 지원 이후 계속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청년 생애 최초 연금보험료 지원」은 국가가 1개월의 연금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계속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4. 지원 신청 이후 가입자 자격 취득 또는 상실 등 변경에 따라 연금보험료 지원 또는 가입기간 추가 산입으로 지원방식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연금보험료 지원 이후에는 지원 신청 취소가 불가합니다.
6. 지원 신청에 대한 결과 통지는 모바일(전자문서)로 통지합니다.

1. “성명”란 및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 “연락처”란에는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신청서 작성 → 접수 및 확인 → 신청서 처리 → 지원 확인 통지 → 수령

신청인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신청인

– 11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44조의4(청년에 대한 생애 최초</u> <u>연금보험료의 지원 신청 등) ①</u> <u>법 제100조의5제1항에 따라 연</u> <u>금보험료의 지원을 신청하려는</u> <u>사람(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u> <u>이라 한다)은 별지 제29호의5</u> <u>서식의 청년 생애 최초 연금보</u> <u>험료 지원 신청서를 공단에 제</u> <u>출해야 한다.</u> <u>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u> <u>공단은 신청인이 법 제100조의5</u> <u>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인지 여</u> <u>부 및 가입기간 추가 산입 여부</u> <u>등을 결정하여 그 결과를 해당</u> <u>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u> <u>③ 법 제100조의5제1항 단서에</u> <u>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u> <u>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u> <u>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u> <u>1.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신청</u> <u>을 한 날(이하 “지원 신청일”</u> <u>이라 한다)에 가입자 자격이</u> <u>있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u> <u>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u>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법 제100조의5제2항에 따
라 임의가입자로 간주되는
경우

나.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달에 가입자 자격을 상실
한 경우

2. 신청인이 가입자 자격을 취
득하였으나 지원 신청일
이전에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지원 신청일 이전에 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경우

나. 지원 신청일 이전에 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지원 신청
일이 가입자 자격을 상실
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
에 해당하는 경우

④ 법 제100조의5제1항에 따른
연금보험료 지원 시점은 해당
지원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
일로 한다.

⑤ 공단은 지원신청일 이후에

<u>제44조의4</u> (생략)	<u>신청인의 가입자 자격 취득·상실 등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결정을 변경할 수 있다.이 경우 공단은 변경 결정의 내용 및 그 이유를 지체 없이 해당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u> <u>제44조의5</u> (현행 제44조의4와 같음)
---------------------------	---